



law church 제11호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0 (베네치아의 아침 오피스텔 1208호)
http://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 (031) 984-9134

• 교회법 통권 제11호 • 발행인 : 소재열 • 발행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 발행일 : 2021. 10. 25.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업자번호 : 119-82-83446
•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 한국교회법연구소)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계시가 오지 않는다. 계시는 아버지에게서 유래하되 아들을 통해서 매개되어, 계시 수납자인 사람에게 이를 때 성령의 조명(illumination)으로 그 내용이 이해되고 수납된다. 계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계시가 이해된다.

설교자 성경관의 중요성

성경을 통한 신앙의 근본을 추구하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이나 설교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 성경 묵상이나 설교자의 성경관은 자신의 성경에 관한 관점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성경의 관점이 달라진다.

유 대교는 구약 성경을 그들의 정경(canon)으로 가져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므로, 삼위일체 교리를 배척하였다.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의 선지자로만 여긴다. 구약을 그리스도 없이 해석하면 유대주의 율법 종교가 된다. 율법을 삶의 법과 구원의 길로 삼는 율법주의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배제되었으므로 구원이 배제된다. 그러므로 구약의 바른 해석은 그리스도론적 해석이다.

여기서 신학이란 결국 성경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며, 역으로 이 신지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신학이 달라진다. 그러한 신지식의 바탕 위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 세계와 일반 역사에 대한 이해가 결정된다. 성경을 통한 신지식이 모호한 사람일수록 삶 자체가 모호해지며 역동성이 상실된다. (*)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심에 있어서 언제든지

교회의 교단 가입과 탈퇴·정관변경의 강행규정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목 차

- I. 서론 - 문제 제기
- II. 지교회와 교단의 관계
- III. 정관변경, 교단탈퇴, 가입의 강행규정
 1. 교단탈퇴 규정은 정관변경 규정과 동일
 2. 새로운 교단 가입 법리
 3.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
 4. 무효인 법적 분쟁을 치유하는 방법
- IV. 결론

[요약]

오늘날 교회 분쟁은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회 분쟁은 상당한 부분 법정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그 분쟁 가운데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된다거나 반듯이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 할 안건, 예컨대 정관변경, 교단탈퇴(가입) 등을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제3의 기관인 당회나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의된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결의들은 무효 사유가 된다. 설령 정관에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가입) 등에 관해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무효가 된다.

A 교회는 독립교회로 있다가 특정 교단에 가입했다. 가입 후 담임목사는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의식이 없다. 그러나 소속 교단은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다. 그러나 일부 교인들은 법원에 임시 당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와 임시 당회장 부존재 확인(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가입이 공동의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었다는 이유였다.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이유로 가처분 소송에서 직무가 정지되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교단 가입을 결의한 후 공동의회에서 교단 가입이 결정되었다는 회의록이 존재하여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의회에서 정관으로, 혹은 결의로 공동의회 이외 제3의 기관에 위임하는 정관 규정과 결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관변경과 교단탈퇴와 가입의 문제이다. 이를 강행규정 때문인데 이에 대해 알아본다.

※ 소재열 목사 /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D.Min., 교회법), 칼빈대학교(Ph.D.,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민법),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서로 「한법 정치, 권징조례 해설」, 「교회의 표준 회의법」, 「교회의 적법절차」, 외 다수.

I. 서론 - 문제 제기

지교회(개별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경우, 지교회는 교단에 종속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와 교단은 양자 사이의 권리 의무의 관계에서 각자의 종교단체의 자율과 독립성이 존재한다. 더 넓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별교회는 소속 교단을 결정하여 가입할 수 있고 스스로 탈퇴할 수 있다. 가입은 소속 교단의 승인사항이지만 탈퇴는 승인사항이 아닌 개별교회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다.

문제는 가입, 탈퇴 등은 일정한 판단 범리가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탈퇴와 가입은 무효가 된다. 특히 교단 탈퇴와 더불어 교회 정관변경 역시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이에 반한 경우는 다 무효 사유가 된다.

교회는 교단에 소속하기로 하였다면 교단 헌법과 결의에 충실해야 한다. 반대로 교단은 소속 지교회에 점령군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양자 사이에는 권리 의무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 주제는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법리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 중심의 판례법리를 살펴보면서 올바른 교회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리를 살펴본다.

II. 지교회와 교단의 관계

교단과 개별교회(지교회)와의 관계는 계약관계

이다. 개별교회의 정관은 계약관계가 아닌 자치법규로 이해한다. 계약관계일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할 때 참여한 자들에게만 효력이 있지만, 자치법규일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할 당시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교회에 가입한 교인들에게도 정관의 효력이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지교회 정관은 계약이 아닌 자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교회와 교단과는 계약관계이다. 계약관계란 계약에 의해 당사자들 사이에 성립된,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의미한다. 즉 계약관계는 양자 의사의 합치(合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지교회와 소속 교단과의 관계는 계약관계이므로 지교회와 소속 교단 사이의 합치에 의한다. 지교회는 소속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소속 교단은 이를 승인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쌍방 사이에 설립된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훼손하면 안 된다.

개별교회(지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교회로서 단독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 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할 수 있다. 지교회가 가입된 교단은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¹⁾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대법원은 “종교단체인 교회와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회와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때 교단의 존립 목적에 따라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시는 지교회 중심이 아닌 교단 중심으로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라는 교단 중심적 판시를 하고 있다.²⁾

하지만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의 정관은 소속 교단 헌법과 충돌시 교회 정관이 우선함을 판시하고 있다.³⁾

참조.

- 2)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 3)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은 교인들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치법규인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이 정관이 소속 교단 헌법과 충돌할 때 교단 헌법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즉 지교회 정관제정은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교단과 교단 헌법은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정관이 우선한다. 종교 내부적으로 교단 헌법의 우선성을 주장하며 지교회를 압박할 때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정관 우선으로 판결한다.

교단에서 소속하기로 한 교회와 소속 승인을 한 교단은 상호 계약관계 하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지교회가 지교회 정관으로 교단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단지 지교회 정관상의 충돌이 아닐 경우, 지교회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다. 교단의 자율권을 근거로 지교회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지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교단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교회와 소속 교단이 계약관계 하에 있다는 것은 양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에 따른 상호 합치가 필요하다. 상호 합치가 거부될 때 계약관계는 파기된다. 이 경우 지교회는 교단 탈퇴가 가능하며, 교단은 소속을 철회할 수 있다. 탈퇴와 가입은 지교회와 교단의 합치가 아니면 불가능

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다. 지교회가 탈퇴와 가입이 자유로운 반면, 교단 역시 이를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다.

III. 정관변경, 교단탈퇴, 가입의 강행규정

1. 교단탈퇴 규정은 정관변경 규정과 동일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유추 적용한다. 이는 대법원의 확정된 판결이다. 이러한 확정판결에 의하면 교회의 정관변경은 민법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규정인 민법 제42조를 적용한다. 그러나 교단 탈퇴에 관한 규정은 모호했다. 그래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교단 탈퇴는 민법 제42조의 정관변경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판례법리를 내놓았다.

지교회의 교단 탈퇴는 교단 변경을 의미하는데 “교단 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판단”했다.⁴⁾ 이런 법리에 의해 교회 정관에 교단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을지라도 정관변경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적용하여 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는 민법 제42조에 따라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있으면 그 정족수는 교단 탈퇴 정족수가 된다(민법 제42조 제1항 후단).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42조 제1항의 전단에 따라 의결권자(재

적 교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⁵⁾

2. 새로운 교단 가입 법리

특정 교단에 소속하지 않는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려고 할 때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가? 가입은 탈퇴와 다른 개념이지만 법원은 가입결의를 탈퇴 결의와 동일한 법리로 적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 대법원은 별도로 판단하였는데 판례법리는 교단 탈퇴와 같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다음과 같은 판례법리를 내놓았다.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에 있어서도 교인들의 일부가 종전의 독립 교회 상태를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그 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규약으로 정하여졌거나 정하여져야 할 사항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찬성한 결의에 의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는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소속된 지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교단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될 것이다

4)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⁶⁾

독립 교회로 있던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려고 할 때도 민법 정관변경 규정인 민법 제42조에 적용한다는 판례이다. 이는 교단 탈퇴와 교단 가입을 동일한 법리로 적용한다.

3.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

“교회정관 변경은 당회에 위임한다”라거나 “정관변경은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혹은 “정관변경은 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는 등의 규정을 두었을 때에 이러한 정관이 유효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정관변경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경우, 이러한 정관변경 규정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관변경이 강행규정이라 할 때는 오직 공동의회에서만 결의되어야 하며, 당회나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변경할 수 없다. 교회 정관에 당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정관을 변경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그 이유는 정관변경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 강행법규(강행규정)라고도 한다(민법 제103조).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제나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상의 규정이다. 강행규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임의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당사자간 별도의 다른 합의에 의해 배제 수정

6) 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할 수 있는 법규라는 뜻이다

지교회 정관상 교단탈퇴나 정관변경은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교인총회(공동의회)가 아닌 제3의 기관에 위임하여 결의(처리)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42조 제1항을 임의규정으로 본 결과이다. 그러나 민법 제42조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볼 때 교회의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는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결정(처리)해야 한다. 민법 제42조 제1항의 법인의 정관변경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강행규정이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42조 제1항의 정관변경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일관된 판례 입장을 갖고 있다.

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관 개정은 사원총회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다만 그 정족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 개정의 권한을 사원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⁷⁾

따라서 교회는 정관에 정관변경이나 교단 탈퇴는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하되 정족수는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 예컨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 혹은 “재적 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라는

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교회 분쟁에 대한 판결에서 정관변경은 강행규정으로 오로지 공동의회에서 개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교단탈퇴, 정관변경 등은 당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규정이 있을 때는 이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과 교단 탈퇴를 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때는 전 재적 교인(총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의회에 전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의 회원(교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위임장은 출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임장으로 정족수를 맞추는 경우가 있다.

4. 무효인 법적 분쟁을 치유하는 방법

교회가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가입) 등을 교회 정관 규정에 따라 당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경우, 앞서 살펴본 대로 이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당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면 그 임시 당회장은 해당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단가입 결의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공동의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소속 교단의 변경은 위법이며, 위법적으로 결정된 교단에서 파공한 대표자(임시당회장)는 효력이 없어 그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정관변경과 교단탈퇴, 혹은 교단가입이 공동의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관변경과 교단탈퇴와 가입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패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당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다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정관변경과 교단탈퇴와 가입을 새롭게 재확인하는 결의를 할 경우, 이 역시 인정된다. 즉 하자를 치유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민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하는 재 결의를 할 경우, 인

정되며, 이미 진행된 소송은 기각된다.

IV. 결론

법원 소송 실무에서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민법 제42조 제1항의 전단에 근거한 법리판단이다. 하지만 제1항 후단에 근거하여 교회 정관의 정관변경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인들의 합의로 운영되어야 한다. 문제 제기를 교회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문제 제기는 목회자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관해 고민하고 바르게 교회를 운영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외부의 세력이나 소속 교단이 무리하게 지교회를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할 때 지교회가 할 수 있는 대항력은 교단 탈퇴이다. 교단 탈퇴 하라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무엇이 적법한 절차인지가 학습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상담

소재열 박사

010-3348-1636



소재열 지음, 1280페이지, 60,000원
 주문 : 한국교회법연구소 (031) 984-9134

최근 무려 1,300여 페이지의 분량인 <교회의 적법절차>가 출간되었다. 본서는 최근 교회 분쟁에 있어서 교회법과 국가 각종 법령,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한 60년 동안의 확정된 법리, 판례에 관해 서술했다. 일반 성도들이 본서를 통해서 교회의 적법절차를 인지하고 있다. 목사와 장로만 모르고 있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본서는 교회 분쟁을 위한 각종 소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의 교회법적 성격에 대한 분명한 법리를 제공하고 있다. 본서를 읽게 될 경우, 불법이 상당히 사라질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회의 부동산 처분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교회 재산에 대한 교회법과 국가 각종 법령,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본서를 통해 반드시 정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엄청난 혼란과 법적 책임이 따른다.

본서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교인들의 뜻에 반한 교회 운영은 갈등과 분쟁을 가져온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피하고 목회자는 교인들과 소통하고 교인들의 뜻대로 교회를 혼란케 하였을 때 교회에서 모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본서에 수록되었다.

교회의 적법절차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인들에게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모든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목회자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본서는 목사와 장로, 집사에게 교회 운영에 필수 지침서이다.



법률사무소 다감

변호사

김 대 준

전문분야
교회사건, 부동산,
건축, 형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2 성운빌딩 2층
 (02) 522-4531~2 (02) 522-4529 010-5624-4530
 이메일 : 999kdj@hanmail.net